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42호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2015-	931호 공인 신조		2
○ 공 고 제2015-	936호 지방세 관련 개인정부 제3자 제공사항 공고		3
○ 공 고 제2015-	946호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4
○ 공 고 제2015-	947호 재산압류 통보 및 채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5
○ 공 고 제2015-	949호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 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6
○ 공 고 제2015-	953호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시송달(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9
○ 남 동 구 의 회 공 고 제2015-	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 남 동 구 의 회 공 고 제2015-	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남 동 구 의 회 공 고 제2015-	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 남 동 구 보 건 소 공 고 제2015-	37호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 송달 공고		33
○ 남 동 구 보 건 소 공 고 제2015-	3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 송달 공고		34

고 시

○ 고 시 제2015-	78호 도로명주소 고시		35
--------------	--------------	-------	----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5-931호

공인 신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신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6. 0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인 신조 사유
 - 구월1동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신조
-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5. 06. 15.
- 신조 공인수 : 1개

○ 신조공인명 : 구월1동[1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비 고
신 조 공 인	구월1동장인 (현장민원실전용)		한글전서체 2.1cm × 2.1cm	현장민원 실전용

※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936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5. 6. 9.
- 제공받은 자 : 아진전산(주)
- 제공목적 : 자동차세 6월 정기·수시분 및 독촉장(2015년 4월분) 인쇄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세 납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대상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5. 6. 9. ~ 2015. 6. 24. (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5년 6월 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9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6.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년 6월 11일 ~ 2015년 6월 25일
-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2. 당사자	성 명	김 * 녀	주민등록번호	250514-2*****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동 ***호 (간석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511,200원 부과 예고		
5. 법적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동법 제12조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4)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9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규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후 재산압류 통보 및 체납액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6.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년 6월 11일 ~ 2015년 6월 25일
-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재산압류 통보 및 체납액 납부독촉		
2. 당사자	성 명	이*길	주민등록번호	590419-*****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호 (만수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지연신고]규정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재산압류(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394 ***호) 통보 및 체납액 265,500원 납부 독촉		
5.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동법 제8조제2항제1호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4)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9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453-298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6.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09-6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
 - 명 칭 : 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 규모
 - 소1-3호선 : A=543㎡, L=50.0m, B=10.0m
 - 소1-4호선 : A=34㎡, L=29.0m, B=9.5~1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도시관리과 도시개발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6.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	논현동	109-60	답	31	31	장*수 (지분 2분의 1)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				
						황*덕 (지분 2분의 1)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				
2	논현동	109-178	답	300	300	김*희 (지분 2분의 1)	미국 뉴저지 0**0 테네플라이 엣지우드 스트리트 **				
						김***인 (지분 2분의 1)	미국 뉴저지 0***5 올드 태판 오코놀 라인 **				
3	논현동	109-236	대	42	42	권*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교골길27번길 ***-*	주식회사 광**행 (여의도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	근저당권 이전	
4	논현동	109-237	대	76	76	황*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5	논현동	109-238	대	12	12	황*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소로1-4호선 (금회시행분)
6	논현동	109-239	답	94	94	최*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인***시 남*구	-	압류	
7	논현동	109-240	답	22	22	최*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인***시 남*구	-	압류	소로1-4호선 (금회시행분)
계				577	577						

지 장 물 조 서

구 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물건의 구조	전체수량	편입수량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기 정	1	논현동	109-237	주거용 (1F)	스레트	1동 (A=139㎡)	1동 (A=80㎡)	황 * 수	남동구 논현동 ***	건물 미등기
기 정	2	논현동	109-236	주거용 (1F)	스레트	1동 (A=75㎡)	1동 (A=40㎡)	권 * 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교골길27번길 ***	건물 미등기
기 정	3	논현동	109-178	상 가 (1F)	조립식	1동 (A=64㎡)	1동 (A=31㎡)	김 * 희	미국뉴저지 0***0 테넨플라이 엠티우드 스트리트 **	건물 미등기
								김***인	미국뉴저지 0***5 올드 태판 오크놀 라인 **	
변 경	3	논현동	109-178	상 가 (1F)	조립식	1동 (A=40㎡)	1동 (A=7㎡)	박 * 수	남동구 논현동 ***- 단풍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동 ****호	건물 미등기
신 규	4	논현동	109-239	창 고 (1F)	조립식	1동 (A=3㎡)	1동 (A=2㎡)	최 * 분	남동구 논현동 ***-***	건물 미등기
신 규	5	논현동	109-240	창 고 (1F)	조립식	1동 (A=13㎡)	1동 (A=4㎡)	최 * 분	남동구 논현동 ***-***	건물 미등기
				화 단	벽 돌	A=5㎡	A=5㎡	최 * 분	남동구 논현동 ***-***	
				담 장	벽 돌	A=20㎡	A=20㎡	최 * 분	남동구 논현동 ***-***	L=12m, H=1.7m
				대 문	철 재	1EA	1EA	최 * 분	남동구 논현동 ***-***	L=3m, H=2m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9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장물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6.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경신지구 소3-3호선, 소1-28호선)
 - 명 칭 :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3.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44-1번지 일원
4. 보 상 시 기 : 2015. 4월 ~
5.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6. 보상대상
 - 토지보상 : 구월동 638-5번지 외 7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7. 공시송달자

소유구분	성 명	소재지	대상토지 및 지장물소재지	사 유	비 고
토지및지장물 소유자	고 * 관	남동구 구월동	635-23	수취인불명	

8. 열람기간 : 2015. 06. 12 - 2015. 06. 29(18일간)
9. 기타사항 :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
신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지난 2014.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리구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 제1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안 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9일 (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453-5013, 5030 /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유형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64
----------	------

발의연월일 : 2015. 06. .

발 의 자 : 전유형 의원

찬 성 자 : 한정희 의원외 4인

☐ 제안이유

- 지난 2014.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리구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 제1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안 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15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또는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3. 교육지원청 관계관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5. 청소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실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제9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대안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비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전유형 의원 (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마련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기금의 재원 중 재난관리기금 예외 단서조항 신설 (안 제16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 (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65
----------	------

발의년월일 : 2015. 6. 10.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최재현 의원 외 7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자원마련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기금의 자원 중 재난관리기금 예외 단서조항 신설 (안 제16조제1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예탁금”을 “예탁금 (단, 재난관리기금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통합기금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6조(통합기금의 재원) ----- -----.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u>예탁금</u>	1. ----- <u>예탁금 (단, 재난관리기금은 예외로 한다.)</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작성자 : 신 동 섭 의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타 기금에 통합되어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타 기금 통합 운용 금지 조항 신설 (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 (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66
----------	------

발의년월일 : 2015. 6. 10.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최재현 의원 외 7명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타 기금에 통합되어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함.

☐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타 기금 통합 운용 금지 조항 신설 (안 제3조제2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기금을 긴급하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에 재정융자·예탁운용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생략)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기금을 긴급하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에 재정융자·예탁운용을 할 수 없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작성자 : 신 동 섭 의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37호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처분예정사항(직권말소)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07. 03.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5. 06. 09. ~ 2015. 06. 23. (14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기타식품 판매업	2013- 0199854	베스트마트	조*형 조*반	남동구 하촌로 30 (만수동)	사업자등록 말소	2014.06.18.	2015.07.03.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15. 07. 02.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4

2015. 06. 0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3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실시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15. 06. 03.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5. 06. 11. ~ 2015. 06. 25.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반 음식점	2011-0199190	드마루 (논현점)	박*연	논고개로123번길 35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	2014.10.20.	2015.06.03.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5. 06.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7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08 외 8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217번길 42-3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6.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08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5.6.10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남동대로708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708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158번길	15-14	2014.7.25	서창방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6.10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서창방산로158번길15-14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5-14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6-24 ,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217번길	42-5	2009.11.16	문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6.10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문화로217번길42-5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42-5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4번길	13-9	2009.11.16	수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6.10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수현로14번길13-9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3-9를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3외 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8-8	2009.11.16	수현마을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5.6.10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수현로18-8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8-8을건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49-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145	2009.7.6	백제, 고구려, 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인천의 옛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5.6.10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매소홀로1145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145를건물번호로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29-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189번길	6	2009.11.16	만의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6.10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만의골로189번길6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6을건물번호로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29-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189번길	12	2009.11.16	만의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6.10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만의골로189번길12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2를건물번호로부여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09-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	8	2009.11.16	독을 굽던 가마터가 있었다는 지역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5.6.10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독점로8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8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6-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217번길	42-3	2015.6.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26 외 4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11	2015.6.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09-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	8	2015.6.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